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107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공봉학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313,827,4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827,4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예비적 청구취지를 별도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주위적 청구와 청구원인을 같이 하면서 그 수량만을 감축한 것이므로, 이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3978호로 C의 아버지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6. 28. 사해행위 일부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D에 대하여 3,066,350,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6. 7. 사망하였는데(이하 D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 중 C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다.

다. C는 2019. 12. 30.경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8나12240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는 2020. 1. 23. 사해행위 일부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C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3,066,350,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C는 위 판결에 상고하였다가 2020. 3. 3.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라. 한편,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2019. 12. 11.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2020. 1. 17. 위 매매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소송에서 사해행위 일부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3,066,350,682원의 채권이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 성립 당시 이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존재 및 그 취소를 명하는 1심 판결의 선고 등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이 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인 상속재산이 감소되어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유발 또는 심화되었고, C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6억 6,6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의 매수가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사실, 피고는 매매대금을 C에게 이체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압류가 집행된 체납 세금을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한 다음 2020. 1.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20. 3.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물로 나와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잔금을 치르는 날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3,347,500원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사경화, 판사 나소라, 판사 조재혁

[별지]**목록(부동산의 표시)****(1동의 건물의 표시)**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동 제 1, 2층 호[도로명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2층 공동주택

지하1층 559.9339㎡

1층 2130.405㎡

2층 194.278㎡

(전유부분의 건물외 표시)제1, 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123.7813㎡ 2층 91.3457㎡**(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9950분의 441.0887

- 이 상 -

